

독산동 우시장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 간: 2019.~2023. (마중물사업 5년)
대상지: 독산1동 292번지 일대 (232,000m²)

사업비: 37,500백만원

내 용: 산업재생 —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상권재생 — 우시장 클린 인프라 조성, 상권 활성화 어울림센터 조성
문화재생 —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독산 어울림길 문화가로 조성

말미마을 골목길 재생사업

기 간: 2018.~2020. (3년)

대상지: 독산1동 1009번지 일대

(면적 28,400m², 총 도로 연장 1,243m)

사업비: 1,100백만원

내 용: 진·출입로 계단 정비, 보행안전시설 설치, 골목길 포장 정비,
골목 정원 가꾸기, 공동체 거점공간 마련 등

복승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기 간: 2017.~2021. (5년)

대상지: 독산1동 147-20번지 일대 (35,308m²)

사업비: 3,248백만원

내 용: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범죄예방환경 조성(도로정비,CCTV,
보안등 설치 등) 및 집수리 지원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

기 간: 2017.~2020. (4년)

대상지: 시흥5동 218번지 일대 (약 10,000m²)

사업비: 2,457백만원

내 용: 주택정비 지원 — 집수리, 빈집정비 등
안전 확보 — 소방·보행안전 확보, CPTED 계획 등
생활인프라 정비 — 마을외부공간 정비 등
마을공동체 지원 —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주민활동프로그램 지원 등



- 도시재생대학 등 관련교육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
- 주민참여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등 공동체 활성화 추진
- 도시재생 관련 소규모 공모사업 기획, 추진 및 재생사업 홍보
- 거버넌스 및 구상단계 사업(희망지사업 등) 발굴 및 추진 지원

도시재생대학 정규과정·특강 운영

도시재생의 이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들 간의 소통방법 이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방법 ·
지역재생기업(CRC) 관련 특강 및
도시재생 사례지역 탐방 등



금천구 도시재생 소통협의회 운영

재생사업 지역별 활동가·주민대표
모임 및 소통을 통한 의견청취 및
협의·현안공유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



금천구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금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 간: 2019.~2021. (마중물사업 3년)

대상지: 독산1동 1100번지 일대 (56,611m²)

사업비: 12,500백만원

내 용: 함께하는 자생마을 — 금하쉼터(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운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금하 주민 활동사업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 기획사업, 마을축제·문화행사)
에너지 자립마을 — 금하 에코·에너지센터 조성 및 운영, 에너지자립마을 추진, 금하 에너지 마을학교 운영, 금하 에너지기업 육성 및 설립, 빗물마을 조성사업
즐거운 생태마을 — 금하숲길 조성사업, 철쭉어린이공원 개선 및 공원편의시설 정비 등
편안한 안전마을 — CCTV·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개선, 마을 진출입부 개선, 금하숲길 보행환경 개선, 집수리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등

독산2동 희망지사업

기 간: 2019.12.27 ~ 2020.12.26 (12개월)

대상지: 독산2동 전체 (약 600,000m²)

사업비: 16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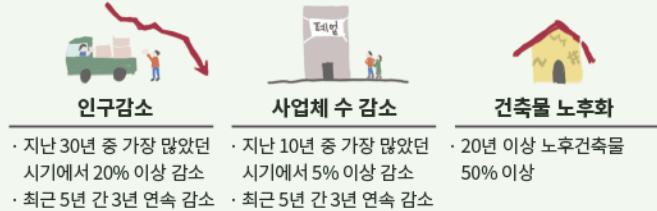
내 용: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활성화,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코디네이터 파견 및 주민역량강화지원

도시재생사업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 쇠퇴지표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사업 유형

구분	주거지 재생형			생활중심지 특화형	일자리거점 육성형
법정 유형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도시경제 기반형
특성	노후주거지역			쇠퇴·낙후 산업(상)업지역	저개발 중심지역
권장면적	5만㎡ 내외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20만㎡ 내외	50만㎡ 내외
선정방법	주민(자치구)공모 선정			서울시 선정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이란?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전단계 사업입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의 가장 큰 특징으로 주민, 행정, 전문가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목적



대상지역

-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도시가 쇠퇴하였으나, 지역의 역사·문화, 인적자원 등을 발굴·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의 가능성이 있는 저층 주거밀집지역
- 재정비촉진지구·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공동체 외래, 물리적 노후화 등 복합적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 및 노후한 자연발생형 저층주거지
- 기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및 인근지역의 파급성·연계성을 고려하여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이 필요한 저층주거지

선정방향

- 재정비촉진지구·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도시재생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높은 지역
- 다양한 주민계층 참여에 의한 주민공동체 역량 등이 높은 지역
- 도시재생 전담부서 구성 및 사업지원 등 자치구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

추진절차

- 신청주체: [(10인 이상 주민모임 + 지원단체) + 자치구]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대상지역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신청방법 및 기간: 상·하반기 각 1회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후 접수 및 신청
- 사업내용: 현장거점 운영, 주민모임 운영, 도시재생 홍보·교육, 지역조사 및 의견발굴, 소규모 환경개선, 민관협력 기반조성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
-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재정비 촉진지구(존치지역 포함)
- 정비구역 중 주민 50% 이상 주거환경관리사업 전환 등의 지역

사업내용



지원대상

: 주택성능개선구역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형)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해제된 정비구역, 골목길재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시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구역



보조금

지원내용

(서울가꿈주택사업)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단독 주택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 범위 내	1,200만 원
	① 담장철거 ② 담장철거 후 재조성 (1.2m 이하) ③ 쉼터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① ② ③ 최대금액 차등지원	① 300만 원 ② 150만 원 ③ 50만 원
	공용부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의 1/2 범위 내	1,700만 원
다 세 대 · 연 립 주 개 별 택 세 대	① 담장철거 ② 담장철거 후 재조성 (1.2m 이하) ③ 쉼터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① ② ③ 최대금액 차등지원	① 300만 원 ② 150만 원 ③ 50만 원
	개별세대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단열,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 범위 내	세대별 500만 원

※ 취약계층일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 범위 내 지원

융자

지원내용

구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저리 융자)				일반 저층주거지역 (이자 지원)			
	집수리		신축		집수리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단독	다가구	단독
한도	6천만	3천만 (최대 4호) (세대당)	3천만	1억	5천만 (최대 6호)	6천만	3천만 (최대 4호) (세대당)	1억 (최대 6호)
	보증			담보		보증		담보
금리	연 0.7%				시중금리 (市, 금리)의 20% 보조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 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 (서울시 전 지점)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 조건 1)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2)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융자지원 최대한도는 보증기관과 협약된 보증한도 및 유효담보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